



제250회 임시회
2006. 6.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6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(2005. 8. 4일 제정, 2006. 1. 1시행)

제13조에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○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“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하고

- 안 제3조 제3항 중 “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·세출외 현금에 관한”을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”으로 하며
 - 안 제4조 내지 제7조를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고,
 - 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
 -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등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 계획수립, 기금운용 결산 보고,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하였으며
 -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과 안9조에 위원회 위원의 출석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

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함은 기금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므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
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
 -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

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“기금운용의 성과분석”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

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